

<논 문>

세무플랫폼서비스 운영자의 형사책임

윤 동 호*

| 목

차 |

I. 문제제기	7	2. 甲의 자료 수집과 환급신청 지원 및 고객과 세무사의 연결 서비스
II. 서비스앤팔런즈의 세무사법 등 위반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	8	3. 甲이 고객에게 연결해 준 세무사 乙의 신고대리 서비스
1. 서비스앤팔런즈의 세무사법 등 위반사건		IV. 대가성 있는 세무대리 소개 · 알선은 변호사법 위반이자 세무사법 위반
2. 고소 · 고발인의 주장과 경찰의 불송치결정		1. 무자격자의 법률서비스 시장 진입 엄격 통제
III. 무자격자인 甲의 세무대행 서비스도 부수적 '세무대리'로서 세무사법 위반	11	2. 甲이 고객과 세무사를 연결한 서비스는 대가성이 인정됨
1. 세무대리 가능자를 세무사나 세무대리 등록자로 제한		V. 결 론
		18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 투고일 : 2022. 9. 27. 1차수정일 : 2022. 10. 24. 게재확정일 : 2022. 11. 14.

<국문초록>

세무서비스를 비롯한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이 무자격자의 플랫폼서비스와 결합하면서 플랫폼서비스가 전문자격사법의 체계와 원칙에 저촉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자격사와 플랫폼서비스 운영자 사이의 갈등 양상 속에서 전문자격사들은 플랫폼서비스를 통한 전문서비스 가격의 하락이 전문서비스 품질의 하락으로 이어져서 전문서비스의 전반적 품질이 저하될까 걱정한다. 전문서비스와 플랫폼서비스의 갈등은 법체계와 신기술의 대립으로 볼 수도 있다. 법체계가 신기술의 성장에 장애가 되어선 안되겠지만, 신기술도 법체계를 벗어나서 성장할 수 없다.

‘자비스앤빌런즈’라는 플랫폼서비스는 세무서비스의 알선에 대해 대가를 받기도 했고, 단순히 알선에 그치지 않고 기장대리 등 세무서비스를 직접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자비스앤빌런즈’ 운영자의 세무사법과 변호사법 위반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

▶ 주제어 : 세무사법, 변호사법, 세무서비스, 플랫폼서비스, 자비스앤빌런즈,
형사책임

I . 문제제기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의 형사책임이 활발하게 논의된 적이 있다. 인터넷서비스이용자들이 주고받는 음란정보나 불법정보, 불건전정보, 비방과 욕설에 대해 그런 공간을 마련해준 ISP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정보를 주고받은 인터넷서비스이용자들이 민·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ISP에게도 이용자들의 정보유통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인터넷의 기술진보가 저해되고, 인터넷 사업이 위축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인터넷의 플랫폼서비스 운영자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다. 전문자격사에 의해 제공되는 법률서비스, 법무서비스, 의료서비스가 무자격자의 플랫폼서비스와 결합하면서 플랫폼서비스가 전문자격사법의 체계와 원칙에 저촉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자격사와 플랫폼서비스 운영자 사이의 갈등 양상 속에서 전문자격사들은 플랫폼서비스를 통한 전문서비스 가격의 하락이 전문서비스 품질의 하락으로 이어져서 전문서비스 전반의 품질이 저하될까 우려한다. 전문서비스와 플랫폼서비스의 갈등은 법체계와 신기술의 대립으로 볼 수도 있다. 법체계가 신기술의 성장에 장애가 되어선 안 되겠지만, 신기술도 법체계를 벗어나서 성장할 수는 없다.

그런데 법률서비스를 소개·알선한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¹⁾와 법무서비스를 소개·알선한 법무통의 법무사법 위반 혐의 모두 검찰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로톡과 법무통 모두 공식적으로는 소개·알선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유료로 의료서비스를 소개·알선한 강남언니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유죄 선고가 예상된다.²⁾

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2458.html.

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5636.html.

그러나 아래에서 볼 ‘서비스앤플랫폼’이라는 플랫폼서비스는 세무서비스의 소개·알선에 대해 대가를 받기도 했고, 단순히 소개·알선에 그치지 않고 기장대리 등 세무서비스를 직접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이 글은 서비스앤플랫폼이라는 세무플랫폼서비스 운영자의 형사책임을 검토하려고 한다.

II. 서비스앤플랫폼의 세무사법 등 위반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결정

1. 서비스앤플랫폼의 세무사법 등 위반사건

서비스앤플랫폼 회사 대표 甲은 단순히 영수증 전산화 등 자료 수집 서비스, 환급신청 지원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 乙과 丙을 연결했다고 주장한다. 甲은 이를 세무대행 서비스로 부르고, 회사 홈페이지 및 옥외광고물 등을 통해 표시·광고했다. 파트너 세무사 사이의 협업관계에 따라 乙과 丙은 세무대리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2. 고소·고발인의 주장과 경찰의 불송치결정

고소·고발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무자격자인 甲은 직접 세무대리를 한 것으로서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고,³⁾ 무자격 세무대리 취급을 표시·광고한 것은 세무사법 제22조의2 제10호 위반죄가

3)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

성립한다.⁴⁾ ‘5년치 폐인 세금 모두 받아드립니다’라고 甲이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죄가 성립한다.⁵⁾ 파트너 세무사 乙은 무자격자 甲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므로 세무사법 제12조의3 제1항의 명의대여죄가 성립하고, 2021. 11. 23. 세무사법이 개정된 이후 甲에게는 세무대리 소개·알선죄가 성립하며, 甲과 乙 및 丙

- 4) 제22조의2(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생략

10. 제20조 제3항(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제17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게는 명의대여 · 차용 · 알선죄가 성립한다.⁶⁾

경찰은 고소 · 고발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성립을 주장하는 죄를 모두에 대해 불송치결정⁷⁾을 한다. 우선 파트너 세무사 乙과 丙은 세무대리 업무를 분담해서 처리한 것이므로 乙과 丙에 대해 명의대여 · 차용죄가 성립하지 않고,⁸⁾ 따라서 甲에게 명의대여알선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파트너 세무사 乙과 丙이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았거나 운영을 일임한 것은 아니기

- 6) 제22조의2(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제12조의3 제1항(제16조의16 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4. 제12조의3 제2항(제16조의16 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린 자

5. 제12조의3 제3항(제16조의16 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1. 23.>

② 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1. 23.>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1. 23.>

- 7)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경찰은 고소 · 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제245조의5),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등에게 통지해야 하며(제245조의6),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경찰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제245조의7).

- 8)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죄가 성립할 수 있음 :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408 판결.

때문이다.⁹⁾ 또한 ‘5년치 떼인 세금 모두 받아드립니다’라는 광고는 세금환급 서비스를 자극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환급서비스가 이루어졌으므로 표시광고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관한 경찰의 판단은 옳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고소·고발인의 나머지 주장은 아래에서 보듯이 타당하다. 더욱이 甲의 세무대리 소개·알선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도 성립한다.

III. 무자격자인 甲의 세무대행 서비스도 부수적 ‘세무대리’로서 세무사법 위반

1. 세무대리 가능자를 세무사나 세무대리 등록자로 제한

조세행정은 헌법의 납세의무가 실현되는 영역이므로 엄격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무사법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만이 세무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이행에 기여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법은 세무사만이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무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다만 전문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2003. 12. 31.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사등록과 세무대리 등록을 구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4년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와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고 세무대리 등록을 해야 변호사로서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세무사법은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9)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도6829 판결의 취지.

세무대리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22조 제1항). 세무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제12조의3) 그 세무사와 다른 사람 및 알선한 사람 모두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22조의2).

그런데 세무사법 제2조가 말하는 세무대리란 ①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②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③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④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⑤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⑥「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⑦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⑧「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등 외에도 ⑨·이들 업무에 딸린 업무(부수 업무)도 세무대리로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법의 ‘세무대리’는 서류의 작성이나 대행과 같은 사실행위는 물론 이를 위한 사전·사후의 부수 업무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민법의 법률행위의 대리 개념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세무대리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서 세무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나, 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세무사법 제12조의5).

이처럼 세무사법은 세무사나 세무대리 등록자에게만 세무대리를 허용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보조직원을 두되,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

2. 甲의 자료 수집과 환급신청 지원 및 고객과 세무사의 연결 서비스

甲은 단순히 영수증 전산화 등 자료 수집 서비스, 환급신청 지원 서비스 등을 고객에게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직접 세무대리를 하지 않았고, 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과 세무사를 연결했다고 주장하며, 甲도 이를 세무대행 서비스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甲의 자료 수집이나 환급신청 지원 및 고객과 세무사의 연결 등 세무대행 서비스는 ‘부수 업무’이지만, 세무사법이 말하는 세무대리로 볼 수 있다. 특히 甲이 개인의 종합소득세 환급을 위해 개발한 앱인 삼쩜삼의 셀프 환급신청 서비스는 파트너 세무사와 납세자 모두의 국세청 홈택스 ID/비번을 모두 제공받아 세무사와 납세자 사이에 수임동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납세자는 부양가족의 인적 사항만 입력할 뿐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산정절차는 모두 진행했으며, 마지막 신고 단계에서 납세자의 국세청 홈택스 ID/비번을 이용하여 신고했다.¹⁰⁾ 이는 甲이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단순히 조력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주도한 것으로서 세무대리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세무사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부수 업무라기보다는 세무사의 세무상담, 세무조정 및 조세신고 등 주된 업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창구 업무이자 가교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인공지능 회계처리로 간단하게 매출과 비용을 정리해 준 서비스는 기장대리이다. 인공지능 운영자인 甲이 기장대리를 한 것이다.¹¹⁾

10)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9333>.

11) 이와 달리 인공지능 자체의 행위이지 대표자의 행위가 아니라는 견해 : 조상규, “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의 법적 책임”, 『중앙법학』 제19집 제3호, 중앙법학회, 2017. 9., 84면 이하.

플랫폼 기업을 부수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직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甲도 인정하듯이 세무사와 협업관계에 있다. 세무사의 지도·감독이 미칠 수 있어야 보조직원으로 볼 수 있는데,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지도·감독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甲은 乙의 명의를 빌어 세무대리를 한 것이므로 甲에게는 세무사법의 무자격 세무대리죄(제22조 제1항)가 성립한다.

3. 甲이 고객에게 연결해 준 세무사 乙의 신고대리 서비스

세무사의 세무상담, 세무조정 및 조세신고를 고객이 원하면 甲은 수수료와 위임동의를 받고 세무사를 연결시킨다. 부수 업무가 세무사의 주된 업무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정해진 세무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甲이 조세신고신청서를 작성했더라도 무자격 세무대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¹²⁾

그런데 고객이 파트너 세무사 乙과 丙 중 누구에게 위임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甲은 세무사가 고용한 보조사무원이 아니다. 따라서 甲에 대해 세무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데, 플랫폼 기업이 고객과 세무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甲에 대해 세무사의 지휘·감독이 미치기보다는 세무사에 대한 甲의 통제력이 발휘된다고 볼 수 있다. 甲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사이의 수임계약이 전산상으로만 처리되므로 세무대리인이 직접 환급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甲이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다.¹³⁾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무자격자 甲이 세무사 乙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객은 세무사 乙을 통해서 甲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甲을 통해서 乙의 서비스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12)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5도8490 판결.

13)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6419>.

따르면 甲은 무자격 세무대리를 한 것이고, 세무사 乙은 무자격자에게 명의 대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乙에게 세무사법의 명의대여죄가 성립한다(제12조의3 제1항, 제22조의2).

IV. 대가성 있는 세무대리 소개 · 알선은 변호사법 위반이자 세무사법 위반

1. 무자격자의 법률서비스 시장 진입 엄격 통제

법률서비스 시장은 변호사가 독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⁴⁾ 현행법은 무자격자의 법률서비스(법률사무)¹⁵⁾ 시장 진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알선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무자격자의 법률서비스 시장 진입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전문자격 사제도를 유지하고 각각의 전문자격사 영역의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세업무의 대부분은 법률서비스에 포함된다. 세무대리는 정부의 과세업무에 협조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부당한 납세에 대해서는 불복한다는 측면도 있다.¹⁶⁾ 이에 따라 세무사법도 회계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두 직무(조세

14) 윤동호,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의 해석과 정책 —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31권 제1호(통권 제57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9. 4. 72면 이하.

15)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6) 최광선, “변호사의 세무대리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37권 제3호, 전남대학

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 신고에 관한 확인)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는 세무대리 업무 등록 변호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0조의2).¹⁷⁾

그런데 변호사법 제109조는 ①변호사가 아니면서 ②이익의 제공 또는 그 약속을 하고, ③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¹⁸⁾ 세무사법은 무자격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세무대리를 했더라도 처벌하는 반면, 변호사법은 대가성 있는 무자격자의 법률대리만 처벌한다. 한편 변호사법은 무자격자의 법률대리 알선에 관한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둔 반면, 세무사법은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2021. 11. 23. 아래와 같은 처벌규정을 둔다.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제2조의2),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22조의2).

교 법학연구소, 2017. 8., 97면과 117면.

- 17) 제외된 두 회계 영역도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 : 고문현,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영역 제한의 위헌성”, 『토지공법연구』 제94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21. 5., 336면 이하와 346면.
- 18)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자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甲이 고객과 세무사를 연결한 서비스는 대가성이 인정됨

甲은 대가를 받고 고객과 세무사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오다가, 세무사법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2021. 11. 24.부터는 대가를 받지 않고 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세무사법의 세무대리 소개 · 알선죄가 불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甲이 2021. 11. 24. 이전까지 대가를 받고 고객과 세무사를 연결하여 세무대리를 소개 ·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세무대리도 법률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021. 11. 24. 이후에는 서비스앤파트너스의 운영권을 세무사 丙에게 양도하여 丙이 고객의 모집 · 상담 · 안내 등을 처리했고, 플랫폼의 유지 · 관리를 위한 정액의 실비만 계속 세무사 丙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콜센터 아웃소싱 계약서 등을 통해 甲과 丙 사이의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운영권을 丙이 갖더라도 고객은 甲이 관리하면서 대표자로 되어있는 플랫폼의 권유를 받아서 세무대리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플랫폼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세무대리 알선에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021. 11. 24. 이후에는 甲이 받은 플랫폼 유지 · 관리비를 대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021. 11. 24. 이후에는 세무사법의 세무대리 소개 · 알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021. 11. 24. 이후 甲의 세무대리 소개 ·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죄와 세무사법 위반죄 둘 다 성립할까. 변호사법 위반죄의 법정형이 현저히 무거우므로 둘 다 성립하고 상상적 경합¹⁹⁾으로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세무사법에 이 죄를 신설한 취지가 상실된다. 변호사법과 세무사법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

19) 상상적 경합이란 수죄가 성립한 경우 그 수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제40조에 따라 다수의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으로 처벌한다.

법의 관계로 볼 수 있고, 이 죄의 신설 취지와 피고인의 이익을 고려하면 두 죄는 법조경합²⁰⁾으로서 세무사법 위반죄만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V. 결 론

자료 수집과 환급신청 지원, 고객과 세무사를 연결한 서비스, 인공지능 회계처리 서비스 등이 부수 업무이지만 세무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甲이 자료 수집과 환급신청을 지원하고, 고객과 세무사를 연결한 서비스, 그리고 인공지능 회계처리 서비스에 대해서는 세무사법의 무자격 세무대리죄가 성립한다.

세무대리도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甲이 2021. 11. 23. 까지 대가를 받고 세무대리를 소개 ·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제 10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플랫폼 유지 · 관리 실비를 세무대리 소개 ·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있고, 따라서 2021. 11. 24. 이후에는 세무사법의 세무대리 소개 · 알선죄가 성립한다. 甲이 고객에게 연결해 준 세무사 乙이 수행한 세무신고대리 서비스에 대해서는 乙의 명의대여죄가 성립한다.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甲에 대한 乙의 지도 · 감독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 법조경합 또는 법조단일은 다수의 구성요건해당행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느 한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을 배제하여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윤동호, 『경찰형사법 특강』, 국민대학교 출판부, 2022, 168면.

參 考 文 獻

1. 단행본

윤동호, 『경찰형사법 특강』, 국민대학교 출판부, 2022.

2. 논 문

고문현,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영역 제한의 위헌성”, 『토지공법연구』 제94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21. 5.

윤동호,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의 해석과 정책 —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31권 제1호(통권 제57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9. 4.

조상규, “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의 법적 책임”, 『중앙법학』 제19집 제3호, 중앙법학회, 2017. 9.

최광선, “변호사의 세무대리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37권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8.

3. 인터넷 자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2458.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5636.html.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9333>.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6419>.

<Abstract>

Criminal Responsibility of Tax Platform Service Operator

Yun, Dong-Ho*

As tax services, legal services, and medical services are combined with platform services for unqualified persons, it is controversial whether the platform service violates the system and principles of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ct. In the face of conflict between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nd platform service operators, professional qualifications worry that a drop in the price of professional services through platform services will lead to a decrease in the quality of professional services, leading to a decrease in the overall quality of professional services. The conflict between professional service and platform service can be seen as a conflict between the legal system and new technology. The legal system should not be an obstacle to the growth of new technologies, but new technologies cannot grow outside the legal system.

A platform service called ‘Jobis’ was paid for the mediation of tax services, and it can be said that it provided tax services directly. In this respect, I believe that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operator of ‘Jobis’ for violating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nd the Attorney-at-Law Act is recognized.

► **Key Words :**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the attorney-at-law act, tax services, platform services, jobis, criminal responsibility

* Professor, The College of Law, Kookmin University, Ph.D. in Law